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민간투자사업

실 시 협 약

(제1회 변경)

2001. 3. 24

건설교통부
인천항공화물터미널(주)



실 시 협 약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항공화물터미널(주)는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01. 3. 24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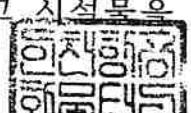
（本）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이하 항공화물창고라 칭한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항공화물터미널(주)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로서 본 협약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2. 감정평가사 : 대한민국에서 감정평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포함)중에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는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596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공사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구 협약에 따라 본 시설물의 최초 공사를 시작한 공사착수일로부터 본 시설물의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5. 공사착수일 : 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구협약에 따라 실제 본 시설물에 대한 공사에 착수한 1999년 10월 1일을 의미한다.
6. 공항개항기준일 :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예정일인 2001년 1월 1일로서 실제 공항개항일까지 공항개항 자연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을 의미한다.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8.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항공화물창고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9.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상의 채권자단을 의미한다.
10. 산용료수입 : 본 사업시행자가 항공화물창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의 총수입을 의미한다. 
11. 민자유치촉진법 : 대한민국 법률 제477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본유치촉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2.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602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3.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6220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4. 본 시설물 : 항공화물창고 시설을 말한다.
15.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사업을 의미한다.
16. 본 사업기간 : 본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7. 본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인천항공화물터미널(주)을 본 사업에 관한 본 사업시행자로 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18. 본 협약 : 정부와 본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9. 본 협약 당사자 : 정부와 본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20. 사업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1998. 10. 20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항공화물창고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내용을 의미한다.
21. 사업수익률 : 본 사업에 대해 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협약당사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 기본계획 상의 사용료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등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22. 사업시행자 지정 :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무관청(안전기획처) 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소비자물가변동률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더 이상 공시되지 않을 경우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2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대한민국법률 제609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수촉법 이라 칭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시공자 : 본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6. 시설사업기본계획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238호(1998. 7. 23)에 의한 수도권신공항 항공화물창고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7. 실시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실시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8. 완공일 : 본 사업시행자가 최종실시설계에 부합하도록 본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완공하여 본 사업시설의 최종준공 확인을 신청하기 전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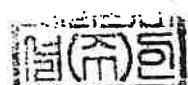
29. 운영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본 시설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30. 운영개시일 : 운영개시일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실제로 사용료 산정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31. 인천국제공항 : 정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도 일원에 건설중인 신공항을 의미한다.
32.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민국 법률 제5689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구 협약상 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 및 권한·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본사업과 관련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을 의미한다.
33. 자금차입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4. 자금차입계약 : 본 사업시행과 관련한 본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과의 자금 차입을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35. 정부 : 본 협약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36. 제반공급시설 : 본 시설물과 관련되어 설치될 공동구, 전기, 통신, 가스, 송수, 열공급 등 제반공급(유틸리티)시설을 말한다.
37. 제세공과금 : 본 사업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
38. 총사업비 :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39. 총선순위채무 : 본 협약의 중도해지시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채무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 포함 등)을 의미한다.
40. “할인율” : 시설사업기본계획 제20조 제③항의 항공화물창고 시설사용료 등의 함수관계식에서 건설비용 등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41. 항공화물창고 : 항공기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의 집하, 조작, 보관을 위한 시설로서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2. 화물수요 :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착 및 출발되는 화물의 총수요를 의미한다.
43. 항공화물창고 사용료 : 본 사업시행자가 항공화물창고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로서 항공화물창고 시설물의 임대료를 의미한다.

제 3 조 (협약서의 구성)

항공화물창고 민자유치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서는 본 실시협약서 및 본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부속서류 포함)와 기본설계 도면으로 구성된다.

제2장 기본약정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정부는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인천항공화물터미널(주)을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 ①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시설물 설계와 건설
- ② 제1항의 건설을 위한 부지의 무상 사용.
- ③ 제1항에 따라 건설된 본 시설물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무상 사용.
- ④ 관리운영권에 의한 제3항의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운영과 사용료의 징수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본 협약 제4조 제3항의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동안 제4조 제4항의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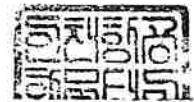
제 6 조 (본 시설물의 귀속)

본 시설물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운영기간 종료 후 본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시설물의 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정부에 이양하여야 한다.

제 7 조 (위험부담)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제 8 조 (사업시행자 및 정부의 의무와 권한)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지분율 10% 이상의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실시절차

제 9 조 (총사업비)

- ① 항공화물창고의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사비 5백만원, 설계비 299백만원, 공사비 13,907백만원, 보상비 0원, 부대비 777백만원, 제세공과금 249백만원, 영업준비금 1,248백만원, 이윤 1,499백만원으로 하며, 그 총액은 17,983만원으로 한다.
- ② 총사업비중 공사비는 13,907백만원으로 하되,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할 공사비 산출근거에는 공종별 수량 및 단가가 명기된 공사비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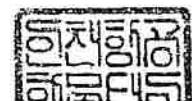


- ① 본 협약 체결이후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쳐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본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2. 정부가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을 인정하는 경우. (단,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계획서상 설계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지적사항은 제외).
 3. 법규에 따라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③ 총민간투자비중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감리비, 환경영향평가비, 외국기술도입비등은 공사기간중 또는 완료후 정산한다.

- ④ 위 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항에 따른다.
- ⑤ 위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변경내역에 대한 예비비, 건설이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의 비율에 따른다.

제 11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항공화물창고 시설규모는 본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규모($11,517m^2$ 2개동, 임대면적 $15,842m^2$ 2개동)로 하되, 시설규모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물 수요 변동에 대한 위험부담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건설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전에 공항공사를 경유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3에 의거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본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행정절차 추진)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한 행정절차 이외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정부는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의 사유, 정부의 규제사유등 기타 본 사업 시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署）

제 14 조 (시설설치 완료기한)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2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장비의 설치 등 시설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권한의 위탁)

- ① 건설교통부 장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지정, 감리비 예치 및 지불에 관한 사항
 2. 본 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3. 본 협약 제10조 제3항에 따른 총민간투자비의 정산
 4. 본 사업시행에 관한 준공검사
 5. 공사중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 지시
 6. 공사시행에 관한 모든 지도·감독
 7. 기타 협약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된 사항
- ② 위 제1항에 정한 사항에 관한 공항공사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를 보장한다.

제4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16 조 (보험가입)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7 조 (민원처리)

본 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등 본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사항은 본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한다.

제 18 조 (안전관리)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대로 안전관리를 하되 추후 보완할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치시에 따르며, 감리전문회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필요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19 조 (준공확인)

- ① 본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45일전까지 확정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받아 공항공사사장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 3개월 전까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후 감리전문회사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한 공사준공검사 신청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며, 공항공사 사장은 준공검사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공사 사장의 준공검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시는 준공확인필증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최초사용료 기타 필요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본 시설물의 건설과 관련한 공사시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본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20 조 (임대 및 운영사항)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 본래의 용도외에 타 용도나 목적으로 본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 ② 본 시설물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본 시설물은 임대를 희망하는 관련기관 및 업체 모두에게 공평한 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본 사업시행자는 업체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임대업체 선정기준을 작성하여 실시계획 제출전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즉시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 임하기 전에 임대희망 국내·외 업체를 파악 (문서확인)하여 임대조건, 임대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가능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에 반영도록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포함한 임대계획을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물 전체를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업체 선정기준의 작성·제출, 임대희망업체 파악, 가계약 체결 및 임대계획 제출 등을 예외로 한다.
5. 운영장비설치 주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사용자의 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자가 운영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사용기간 만료후 설치된 운영장비의 처리는 설치자가 자비로 철거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임 사용자와 계속 사용에 대해 협의될 경우에는 협의 결과에 따른다.
6.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 선정과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보험가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시행자는 임대 등 사업계획서 제출내용 이외에 본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8. 본 시설물에 대한 본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과동시에 시설사용자가 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시설사용기간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에게 자신의 무상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시설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시설사용자가 영업수행상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국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영업승인의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이를 근거로 본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승인의 취소나 철회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본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적의무시설(급수, 위생(흡연실), 소화, 전기 및 기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 시설사용자의 복지 및 편의를 위한 적정규모의 식당과 휴게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시행자나 시설사용자는 본 시설물 외에 필요한 추가시설을 설치, 이전, 폐쇄,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가 ICAO규정, 항공법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익자부담 경비원칙에 의하여 경비감독기관이 정하는 소요의 청원경찰을 직접 임용하여 근무배치 및 감독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21 조 (유지관리)

① 본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동안 본 시설물이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전까지 유지관리지침서가 첨부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말 다음 연도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2종시설물(특수구조)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2. 일반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③ 본 사업시행자는 준공후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준공도,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와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관리대장(건축분야)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시행자는 1종, 2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한다.

⑤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시로 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⑥ 본 사업시행자는 각종 설계도서(원본)를 건설교통부 도면관리예규를 준용하여 관리하고 무상사용기간동안의 유지관리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설계도(원본)와 함께 건설교통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 22 조 (운영비)

토지사용료 및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는 1998. 7. 23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19,982백만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별첨 부록3과 같으며, 운영기간중의 보
험료는 본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6.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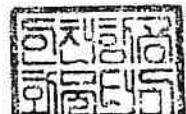
제 23 조 (토지의 무상사용 및 토지사용료 납부)

본 사업을 위한 토지는 본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개시직전까지 무상으로 사
용토록 하고 운영개시후 토지사용에 대하여는 실사용 토지면적(제11조 ①항
의 부지규모)을 기준으로 국유재산법 및 공항시설관리 규칙에 의한 토지사용
료를 인천국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항공화물창고 사용료

제 24 조 (할인율)

할인율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5.36%로 한다.



제 25 조 (사용료의 징수 및 변경)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동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관련 제규정을 준용하되 시설사용
자와 별도 협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에 대한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자

율적으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

①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에 관련 사항은 별첨 부록1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0조(제10조 제2항제3호 제외)에 의한 조정과 공사시행중 또는 완공후에 천재지변, 정부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산시는 무상사용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준공필증이 교부되고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공항개항일까지의 공항개항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본 사업시행자간 협의에 의해 무상사용기간 조정에 반영한다

④ 제10조 제2항 제3호로 인한 변경은 사용료에서 조정한다.

⑤ 무상사용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은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년이 초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로 조정할 수 있다. 단, 국가의 정책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정부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7 조 (최초사용료)

① 최초사용료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71,510원/m³/년(1998년 7. 23 볼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운영개시 시점에 작용할 최초사용료는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첨 부록1의 산식을 적용한다.

제6장 불가항력의 사유

제 28 조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사유”라 함은 향후 협약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하며, 다음의 사태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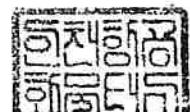
1. 전쟁 기타 적국의 침공행위.
2. 폭동, 혁명 또는 내란.
3. 예측불가능한 재해(자연재해에 한정하지 아니함).

제 29 조 (책임부담)

본 사업시행자가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불가항력 발생통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동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불가항력의 대책협의)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의한 통지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개시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책 및 이에 대응한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협약의 종료

제 32 조 (협약의 종료)

① 다음의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의】

1. 본 협약의 별첨 “공사에관한협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3. 본 사업시행자의 주주총회에서 본 사업시행자의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4.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의한 경우 (단, 이경우 정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한 본 협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동 기간의 만료로 본 협약은 종료된다. 단, 본 협약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본 협약 제31조에 따른 협의 개시 후 60일 이내에 본 협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28조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와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한 후 6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본 협약이 위 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정부는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본 시설물관리운영권의 적정가치(공사기간중인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경우에 각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적정가치에 대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여 그 적정가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위 적정가치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감정평가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본 협약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결과에 따라 해당 적정가치를 인정하기로 하며, 정부는 감정평가사의 위 서면 통보후 해당 금액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 ⑤ 본 협약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 제5조에 규정한 무상사용기간 및 운영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또한, 본 협약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종료되는 경우에는 위 무상사용기간 및 운영기간도 함께 종료된다.
- ⑥ 본 협약이 운영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종료일 6개월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운영기간 종료일에 본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건설교통부에 인계한다.
 2. 위 시설점검 결과 본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5. 전항의
제2항

제8장 분쟁의 해결

제 33 조 (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법(법)〕

② 제1항과 같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상사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자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9장 비밀유지

제 34 조 (비밀유지)

①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본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타방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타방 당사자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정보 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 10장 기 타

제 35 조 (정부의 지원 및 협조)

본 사업시행과 관련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6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며, 본 협약 내용 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 내용에 따라 동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37 조 (공사에 관한 협약)

공사에 관한 협약사항은 본 협약의 별첨 “공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9 항까지와 같다.

제 38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제 39 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본을 정본으로 한다.



제 40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 당사자는 첫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1. 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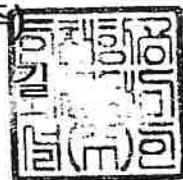
대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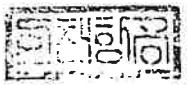
건설교통부 장관 김



인천항공화물터미널(주)

대표이사 곽영길





부록 1. 수익률과 사용료의 산정 공식

사용료 산정은 아래의 함수관계식을 기준으로 한다.



$$\sum_{t=1}^n CC_t + CR = \sum_{t=n}^N (OR_t - OC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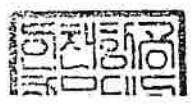
여기서, n : 무상사용기간 개시 시점, N : 무상사용기간 종료 시점

CC_t : 시설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건설비용의 현재가치

CR : 시설준공을 위한 총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이윤

OR_t : 운영에 따른 매년도 모든 수입의 현재가치

OC_t : 운영에 따른 매년도 모든 비용의 현재가치



공사에 관한 협약



제 1 조 (건설사업이행보증)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따른 건설사업이행보증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총 사업비에서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이윤 및 부대비중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조 (지체상금의 납부)

- ① 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 본 사업의 완공기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그 실제 완공일까지 미완공분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1일당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실시협약 제13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은 연장된 완공기한 이후부터 부과한다.

제 3 조 (공사의 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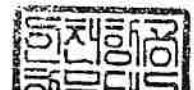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감리전문회사는 위 하도급을 받은 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본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시공과정에서 노임체불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기성부분 중 체불노임을 직접 징수하기로 한다.

제 4 조 (공사의 착수)

- ① 본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계를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쳐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도록 본 사업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는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조 (공사감독)



본 사업의 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의 감독을 받아 시행한다.

제 6 조 (책임감리)

- ① 공항공사사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당해공사 감리 시행방안에 따른다.

- ② 공항공사사장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본 항공화물창고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사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매 분기의 감리비를 그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첫째 날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항공사는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감리비를 감리전문회사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본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제 7 조 (공정보고)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항공화물창고의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 공사추진현황을 공항공사사장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성검사)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는 기성검사 완료후 지체없이 본 사업시행자와 공항공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설계 및 일반사항)

- ① 항공화물창고시설의 건설위치는 건설교통부가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로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 인천국제공항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법, ICAO 및 FAA 기준등 국내외 항공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고 기타 관계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설계내용 및 정부와 협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건설 추진현황을 공항공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단계별 주요내용 및 공정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의 '공정관리절차서'에 따라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전체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실시설계도서는 본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되 본 협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설계, 공사, 감리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공항공사사장의 감독을 받아 시행한다
- ⑥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이 공항내 타 시설과 동일한 품질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항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사업관리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⑦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 제작, 설치, 시공 등 모든 업무범위에서 국제품질 규격인 ISO 9001 또는 KSA 9001 품질시스템 요건에 따라 품질보증체계를 수립한 후 이에 따라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⑧ 공항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건설을 위한 자재수급과 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공항공사에 요청할 경우에는 가급적 지원하여야 한다.
- ⑨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전 공항공사의 관리기준 공정계획에 따라 전체 시설물과의 종합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⑩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인 공항시설에 대한 설계이므로 조사내용, 중간 결과 및 최종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⑪ 공항공사는 민자사업자 및 민자사업의 시공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계획의 이행상태 및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보증감사 및 필요시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⑫ 사업시행자와 민자사업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사업착수전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⑬ 본 사업시행자는 설계시 관련 전문가로 "설계자문단"을 구성하여 최소 2회 이상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자문결과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⑭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용역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10 조 (부지계획 및 시설물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시설물 등의 배치는 장래확장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시설물의 특성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제 11 조 (토목 및 옥외시설에 관한 사항)

- ① 모든 설계내용은 공항공사에서 실시하였거나 현재 시행중인 각종 실시설계와 부합되도록 하고, 그 수준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일반구조물의 설계하중은 기능에 따라 공항공사에 협조를 받아 결정한다.

- ③ 공항전지역의 배수시설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배수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오·배수망도 작성시 관련 지하구조물 시설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오·배수망도에 관련 지하구조물 시설을 삽입하며, 공사에서 기계획된 주배수 M/H 및 오수 M/H까지 사업시행자가 설계 및 시공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주차계획에 관한 설계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공동구를 제외한 본 시설의 상하수도 및 중수도는 공항공사에서 건물외 벽 3m까지 설치하고, 지선공동구 설치시에는 기발주한 공사의 간선공동 구 계획에 맞추어 본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공사와 협의하여 지선공동구를 설치하여 자체수급라인을 연결처리하고 규모 및 용량은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⑦ 본 시설의 에너지공급(전기)은 화물터미널 지역내에 건설되는 변전소 등을 통하여 공급받도록 하되, 냉난방 공급을 위한 동력동(기계실)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에서 설치하는 공동구와 접속방법은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건축시설에 관한 사항)

- ① 단위건물에 대한 외관은 건물별 특성과 부합되게 하고 공항전체 이미지와 연계되도록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항지역내 설계, 시공되는 민자유치시설물에 있어 각 시설물간의 유기적인 조화와 인천국제공항만의 독특한 Identity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디자인 요소는 공사에서 마련한 “민자유치시설 외부환경디자인요소 설계기준 및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함)의 내용에 따른다. 지침서의 주요내용은 외부색채계획, Signage & Graphics 및 광고물, 외부가로시설물, 예술조형물로 구분된다.

- ③ 건물에 대한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소요면적 계산서(Space Program)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④ 건물 및 주변시설의 구조는 매립지반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설계하며 부족할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실시한 완벽한 지반조사를 근거로 설계하고, 특히 발생가능한 지진에 충분히 대처하도록 본 설계에 반영할 기준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토록 한다.
- ⑤ 건물의 외벽 및 지붕구조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고 조류의 서식이나 피난방지 등을 고려한 구조로 실시설계하여야 한다.
- ⑥ 건물 내·외부의 마감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가 되도록 선택하되 공항전체 미관을 저해하는 재료의 선정은 지양하여야 한다.
- ⑦ 건물 외부벽체에는 반사 및 전파방해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및 공항내 통신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⑧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⑨ 콘크리트 공사와 금속공사에 대한 설계시 염해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마감외장재 선정시 염해 방지대책을 강구한 후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계시설에 관한 사항)

- ① 인천국제공항은 집단에너지 및 청정에너지사용 고시예정지역임으로 고시 내용에 부합되도록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계설비의 건설 및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옥외시설 및 관련설계용역에서 요구할 경우 유틸리티 소요량, 입출구지점, 관경, 유속, 유량, 공동구내 유틸리티 배치방안 등 제반자료를 제공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 등의 실내온도, 환기, 습도, 기류, 청정도, 등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여 건물의 기능 및 특성에 적정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공기조화 설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급·배수 설비는 공항공사에서 시행중인 급수공급 및 배수계획을 고려하고 화장실 세정용수 등은 중수도 공급방안에 따라 건물내부 중수공급배관이 별도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생활하수는 중수도 처리장으로 유입토록 하되, 생활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 및 유분을 제거하는 자체처리시설을 거쳐 분류식 하수관거(오수관거)에 연결하여야 한다.
- ⑥ 가스배관은 사업시행자가 인천도시가스와 협의하고 주라인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본 관로의 유지보수도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⑦ 건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시설 및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⑧ 본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건물의 주용도상 비상급수 및 중수탱크를 자체 또는 그룹별로 설치하고 건물에서 요구되는 양수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⑨ 냉·난방에 필요한 열원은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받아 사업시행자가 자체 동력동(기계실)을 건설 건물이 요구하는 냉난방 유틸리티를 생산 공급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 ⑩ 본 사업시행자는 추후 공항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될 열공급 배관시설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⑪ 중온수·중수·급수시설은 공항공사에서 건물외벽 외곽 3m까지 시행하고, 본 사업시행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유틸리티 공사와 연계하여 지선 배관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량기를 설치

하여 원격검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과 연결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설치장소, 연결지점 및 방법등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건물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⑫ 본 사업시행자는 각종 유틸리티의 사용료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후 납부하여야 한다.(단, 중온수 사용료는 열병합 사업자시행자, 공항공사, 본 사업시행자가 협의후 결정)
- ⑬ 본 사업시행자는 냉방을 위한 CFC계 냉매와 소화설비를 위한 HALON 가스 사용을 지양하고 오존 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대체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전기시설에 관한 사항)



- ① 전력공급은 공사에서 건설하는 배전변전소를 통하여 공급받도록 하며, 모든 전기설비는 공항기능의 충족성, 에너지절약 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전력시설설계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이를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가 설치하는 배전선로 다회로 개폐기로부터 인출하여 수전선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측 수전설비에는 여타모듈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다회로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조명설비는 건물의 기능 및 분위기를 고려한 조명 방식, 광원, 조명기구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옥 외에 설치되는 조명기구(가로등, 주차장등, 보안등 등)는 전체 옥외조명시설 및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공사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하여 설계하여야 하 고,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조명자동 제어 방식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설계시에는 우선적으로 단계별 전력수요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 공항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설계 및 인천국제공항 단계별 전력공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하며, 자체 수전설비는 단계별 수요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⑤ 건물 설비중요도 및 전원공급환경을 검토하여 필요시 상용전원외에 예비 비상발전설비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고려 하여야 한다.
- ⑥ 공항공사가 계획하는 인천 국제공항 전력통합 감시 및 제어시스템 구축과 연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의 전력감시 정보가 공항공사시스템에 제공되어져야하며, 관련시설의 구성은 공항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전력공급 및 공사시행 구분에 있어서 책임분계점은 항공화물창고시설 지역배전시설 특고압 배전용차단기(22.9kV) 2차측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건물내 특고압수전반까지의 관로 및 케이블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전기사고의 파급방지 및 계통 보호협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전력사용량 계량을 위한 장치(MOF 및 원격 검침용 DM)는 본사업시행자측 수전설비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⑧ 본 시설 지역내 설치될 배전변전소의 설계시공은 공항전체 전력계통 구성 및 확장성을 감안하여 공항공사가 일괄 시행하고 이에따른 건설비용은 동 시설의 이용시에 공항시설 운영주체와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담한다.
- ⑨ 건설기간중에 공사용 임시전력을 공항공사가 선투자한 배전선로에서 수급하는 경우에는 전기수용용량 및 사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시설분담금을 공항공사의 청구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통신, 전자시설에 관한 사항)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정보, 통신 및 자동화시스템은 통합 구축 및 운영될 것이므로 본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단, 각 법인의 고유한 정보, 통신 및 자동화시스템으로서 공사와 연계성이 없는 시스템은 통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① 기본적인 통신선로 및 관로, 적용되는 통신시스템 설비는 공항공사의 관련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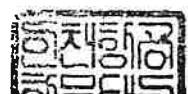
- ② 통신망 구성에 있어서는 국제통신연합ITU의 권고 및 전기통신기술기준, 정보통신부 고시사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통신망 구성을 위한 통신선로 및 관로구성 등 각 설비는 공항공사의 관련설계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 공항공사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각 주요시설간의 기간망(Infrastructure-Network)과의 인터페이스는 비동기 전송방식(ATM) 적용을 기본으로 한 광섬유케이블(Optical-Cable)로 연계 설계하여야 한다.
- ④ 주배선반(MDF), 중간배선반(IDF)에 관련된 시설은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배선은 통합배선 방식으로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 ⑤ 공항 주 통신관로로부터 본 시설에 인입되는 관로 등 추가시설은 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선부분의 선로배선은 Cable Tray를 설치하여야 하고 무선설비(TRS, PAGING, 무선 LAN)를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 지역의 Antenna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⑥ 방범 및 보안에 관련된 보안설비(CCTV, ACC ESS CONTROL등) 및 비상방송 설비는 공항공사의 타 시스템과 연계 가능토록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에 따른 제반 사항은 공항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규정은 공항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계기착륙시설의 CAT-III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설계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 (종합정보통신시스템(IICS)에 관한 사항)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에서 발생되는 공항 관련된 정보는 공항의 지능화를 위해 정보의 공유화, 데이터의 분산화, 시설관리의 효율화, 공항업무의 능률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② 본 시설에서 “공항정보종합처리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정보(항공서비스, 지상조업장비, 계류장관리, 장비관리등)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공항공사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표준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③ 공항내 분산된 건물 및 항공화물창고시설 상호간 적정정보(데이터, 영상, 음성)의 전송 및 교환은 “공항기간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에 설치되는 모든 방재 및 방범정보는 “공항안전관리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하며, 건물내 설치되는 방재, 방범시설은 공항공사의 관련 방재, 방재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
- ⑤ 공항공사는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을 위하여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자(MSI)로 하여금 정보통신 및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사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7 조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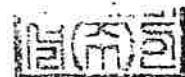


- ① 모든 소방시설은 소방법 및 국내외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협회, 화재보험협회, 인천광역시 소방담당 등 관련 기관의 자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공항공사의 소방시설 통합감시체계와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성·시행하여야 한다.
- ④ 본 사업시행자는 소방시설(소화용수 및 가압송수장치 포함)을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인·허가사항도 수행하여야 한다.

제 18 조 (환경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 ① 본 사업시행자가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시에는 관련법규 및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계획수립 및 설계시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건설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동 내용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시 해당시설에서 생성되는 운영정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량 및 위험물질, 유해물질 관리정보등)를 TMS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19 조 (도면작성 및 제출)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은 물론 운영과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과정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행, 관리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통일화하고, 이를 Data Base로 구축·관리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설계통합기준서와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설계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① 동 기준서에 없거나 신규 발생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CAD System (Auto CAD)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하드카피와 함께 동자료를 전자화일 형태(CD-ROM, ZIP등 저장매체)로 제출하되 동자료는 공항공사의 CAD System (공항공사는 Auto CAD Release 12, 14, 고온글 4.0 사용중임)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도면은 벡터자료로, 외부 참고자료는 라스터 또는 벡터자료로 제출하되, 벡터자료는 *.DWG, *.DXF 파일 포맷으로, 라스터자료는 TIFF 파일 포맷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 ④ 지형도 입력사항 및 기준은 국내에서 사용중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제17호 : '95. 5. 29)에 의거 표준코드와 표준도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도형 데이터는 도면의 종류와 레이어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⑥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보고서는 보고서와 함께 동 내용을 수록한 전자화일(CD-ROM, ZIP등 저장매체에 수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항공사가 사용하는 Word Processor는 MS-WORD, 엑셀, 파워포인트와 호환되어야 하며, 단, 내역서는 한글, 아리랑도 가능하다. 자료제출시 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제출목록 형식에 따라 엑셀화일로 작성된 자료제출목록을 출력물 1부와 함께 디스켓화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Data Base화 하였을 경우에는 동자료를 CD-ROM, ZIP등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동 기억장치와 목록 및 테이블을 제출한다.
- ⑧ 확정된 성과물 제출시 자료의 표지는 공사의 색상을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⑨ 기타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끝.

